

「 큰 꿈 함께 가꾸는 High 함현 」



함현통신
2022-149호

학교생활인권규정
개정 확정 및 공포

담당자 생활안전부
교무실 070-7097-0806
FAX 031-487-0942

존경하는 학부모님께
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이 함께 동참하는 생활교육을 하고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여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사오니 학생과 함께 이 규정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<개요>

	학교생활인권규정	학생생활교육위원회
내용	1) 신설 항목 (1) 제24조 (명칭) (2) 제25조 (목적) (3) 제26조 (학생자치회 조직·운영) (4) 제27조 (협약/지원사항) (5) 제28조 (부서) (6) 제29조 (학급자치회 직무 및 선출) (7) 제30조 (학생자치회 직무 및 선출) (8) 제31조 (대의원회) (9) 제32조 (자치활동의 권리)3,4항 (10) 제59조(목적) (11) 제60조(적용 범위) (12) 제61조(개정원칙) (13) 제63조(구성 방법) (14) 제69조(공포 및 정보 공시) (15) 제71조(개정절차) 2) 변경 항목 (1) 제6장 보칙→학교생활인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(2) 제62조 (학교생활규정 제·개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) (3) 제65조 (개정안의 발의) (4) 제66조 (문헌조사와 의견수렴)	1) 신설 항목 (1) 제10조 3항 (2) 제11조(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 (3) 제12조(비밀의 범위) 2) 변경 항목 (1) 제18조 1항(선도의 방법- 학교 내 봉사) (2) 제22조 2항(재심의 절차 : 변경된 조의 변경에 맞추어 변경)
시행일	2022년 12월 7일	

우리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토대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며,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2022. 11. 15.

함 현 초 등 학 교 장